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가단7677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09,49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 이후에는 위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종전의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어 적용되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판사 권순호

별지